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19112 |
| 의 뢰 인 | 김주영 의원 |
| 회 답 일 | 2026.6.9. |
| 추계번호 | 26E2740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

## 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2,556억원 등 2028~2033년까지 6년간 총 2조 6,038억원(연평균 4,34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|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2033 | 누적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(제30조) | −2,556 | −5,279 | −5,451 | −5,220 | −4,967 | −2,565 | −26,038 | −4,340 |

# Ⅱ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30조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 | ○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<br>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6. 12. 31.<br>(개정안) 2028. 12. 31. | |

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30조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 | ○ |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, 징수기준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8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

❑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'근로소득 지급명세서' 상 신고된 감면액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

○ '근로소득 지급명세서'상 신고된 감면액은 과거 취업자에 대한 누적 금액이므로, 이를 전체 감면기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신규 취업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

| 청년<br>(5년간 감면) | 감면액 발생 시점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
| 2020년 취업자 | 1년차 | 2년차 | 3년차 | 4년차 | 5년차 |
| 2021년 취업자 | | 1년차 | 2년차 | 3년차 | 4년차 |
| 2022년 취업자 | | | 1년차 | 2년차 | 3년차 |
| 2023년 취업자 | | | | 1년차 | 2년차 |
| 2024년 취업자 | | | | | 1년차 |

○ 2024년 귀속소득(2025년 발생)을 기준으로 연단위 환산액을 계산한 후,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[1]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
❑ 동 추계에서 활용한 「근로소득 지급명세서」 자료는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실제 발생한 금액 등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~2029」, 2025.9.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 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중소기업[2]에 취업한 청년, 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 후 3년(청년 5년)간 소득세의 70%(청년 90%) 감면

- ○ (감면 대상) 청년·노인·장애인 등·경력단절 근로자
- ○ (감면기간) 3년 (청년은 5년)
- ○ (감면율) 70% (청년은 90%)* *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
- ○ (적용기한) 2026.12.31.

❑ 동 감면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(2012년 취업자부터 적용)된 후, 점차적으로 확대

[표 2]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요 개정사항

| 개정일 | 감면 대상 | | 취업 후 감면 기간 | 감면율 | 연간 감면 한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대상 | 청년의 범위 | | | |
| '11.12.31. | 청년 | 15세~29세 | 3년 | 100% | 없음 |
| '14.1.1. |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 등 | 15세~29세 | 3년 | 50% | 없음 |
| '15.12.15. |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 등 | 15세~29세 | 3년 | 70% | 150만원 |
| '16.12.20. |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 등, 경력단절여성 | 15세~29세 | 3년 | 70% | 150만원 |
| '18.5.29. |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 등, 경력단절여성 | 15세~34세 | 3년 (청년: 5년) | 70% (청년: 90%) | 150만원 |
| '22.12.31. |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 등, 경력단절여성 | 15세~34세 | 3년 (청년: 5년) | 70% (청년: 90%) | 200만원 |
| '25.3.14. |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 등, 경력단절근로자 | 15세~34세 | 3년 (청년: 5년) | 70% (청년: 90%) | 200만원 |

주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(감면실적) 2021년 8,397억원에서 2025년 1조 1,638억원(잠정치)으로

2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농어업, 제조업, 도매업 등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

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[표 3]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)

|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p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감면액 | 8,397 | 9,667 | 9,609 | 11,384 | 11,638 |

주: p는 잠정치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❑ ‘근로소득 지급명세서’상 신고된 감면액(2024년 귀속소득)을 연단위로 환산 후 연도별로 배분하며,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향후 연단위 환산액이 증가할 것을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산출

○ 감면율 70%대상(60세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자) 감면신고액: 1,013억원

– 감면기간(3년)으로 나누어 연단위 환산액(2024년 귀속기준 338억원)으로 계산

○ 감면율 90%대상(청년) 감면신고액: 9,926억원

– 감면기간(5년)으로 나누어 연단위 환산액(2024년 귀속기준 1,985억원)으로 계산

[표 4]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에 따른 감면액 발생

(단위: 억원)

|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자 | 감면액 발생 시점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2033 |
| 2027년 취업자 | *372* | *384* | *396* | | | |
| 2028년 취업자 | | *384* | *396* | *409* | | |

| 청년 | 감면액 발생 시점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2033 |
| 2027년 취업자 | *2,185* | *2,256* | *2,329* | *2,405* | *2,484* | |
| 2028년 취업자 | | *2,256* | *2,329* | *2,405* | *2,484* | *2,565* |

(3) 추계결과

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2,556

억원 등 2028~2033년까지 6년간 총 2조 6,038억원(연평균 4,34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| |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2033 | 누적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(제30조) | | −2,556 | −5,279 | −5,451 | −5,220 | −4,967 | −2,565 | −26,038 | −4,340 |
| |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자 | −372 | −767 | −792 | −409 | | | −2,340 | |
| | 청년 | −2,185 | −4,512 | −4,659 | −4,811 | −4,967 | −2,565 | −23,699 | |

# 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Ⅴ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세제분석1과 | 신홍철 | 박연서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신홍철 | 02-6788-4745 | hongfe@assembly.go.kr |